

의안번호	제 796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3월 14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6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발 의 자 : 박한범,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임병운,
윤은희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대표 관광지 청남대 발전의 일환으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주차료 면제 조항신설(안 제14조제2항)
 - 그 외, 국민과 소통하는 대표관광지 청남대 발전의 일환으로 기타 주차료 면제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2018. 3. 2 ~ 3. 12(10일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주차료 징수) ①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차량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
6.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증 소지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
8.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
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

10.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4조(주차료 징수)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청남대 경비</u> <u>2. 청남대 관광안내</u> <u>3. 청남대 조정 식재 및 전문관리</u> <u>4. 청남대 환경미화</u> <u>5. 각종 문화·전시 행사</u> <u>6. 주차장 운영 관리</u> <u>7. 제7조제1항 각 호의 운영 및 관리 등</u> 	<p><u>제14조(주차료 징수) ①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u> (삭제)</p>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민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차량</u> <u>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u> <u>3.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차량</u> <u>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u> <u>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u>

현행	개정안
	<p>6.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증 소지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p> <p>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p> <p>8.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p> <p>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p> <p>10. 충청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p> <p>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p>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연 병 철